

의안번호	제135호
의결 연월일	2019년 월 일 (제 회)

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

제 출 자	충청북도교육감
제출연월일	2019년 2월 26일

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35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9. 2. 26.
제출자 : 충청북도교육감

1. 제안이유

「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에 따라 ‘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’에 대해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위탁기관 : 중·고등학교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 위기학생 장·단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중 진로직업교육 및 인성교육을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는 운영기관(장기 최소 1년, 단기 1~3개월)
- 사업대상 :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 위기학생
- 위탁범위 : 학업중단 위기학생 장·단기 대안교육 위탁교육 전반
- 위탁기간 : 2019. 11월까지
- 위탁사업자선정방법 : 경쟁 입찰을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
- 사업비 : 165,000천원(지방보조금 80,000천원, 교육비특별회계 85,000천원) * 연도별 변동
- 위탁주요사무
 -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 위기학생 대안교육 위탁
 - 진로직업교육 및 인성교육 관련 대안 프로그램 운영
 - 대안교육 위탁학생 출석, 안전 관리
 - 학업중단 숙려제, 학교폭력 피해학생, 미혼모 등 위탁 학생 보호 및 교육
 - 대안교육 협력체계 구축 지원

3. 참고사항

- 위탁현황

- 2018. 3 ~ 2018. 12./장·단기 대안교육 위탁기관 15기관 선정

- 관계법령

- 「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- 「충청북도교육청 대안교육위탁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및 제9조

- 관련공문

- 교육부 교육기획보장과-4101(2018. 9. 17)

- 붙임 : 2019.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계획 1부.

2019.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계획(안)

2019.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계획(안)

<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과>

1 추진 근거

- 2019. 교육 소외계층 지원사업 계획 안내(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-4101)
- 「충청북도교육청대안교육위탁기관의지정및학생위탁등에관한규칙」 제3조 및 제9조
- 2019. 주요업무계획 4-2-4.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

2 추진 배경

- 공교육 내에서 학교생활에 흥미를 잃은 잠재적 학업중단 위기학생 증가
- 주지 과목 위주, 입시위주 교육으로 인한 공교육의 경직성 해소 필요
- 학생 개개인의 적성소질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·적성·희망·진로에 맞는 교육 제공 필요

3 목 적

- 대안교육 활성화, 다양화를 통한 부적응학생 교육지원강화 및 학업중단 예방
- 위기학생에 대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회 확대 및 위탁교육 프로그램 내실화

4 방 침

- 위탁 기간은 단기(1개월 이내) 및 중·장기(1개월 이상) 단위로 운영
- 교육지원청별 위탁교육기관 공모·선정을 통해 위탁교육 기회 확대
- 운영방법은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기본계획 방침을 준수
 - 기간, 출석, 성적처리 방법 등은 해당학교 학업중단예방위원회에서 결정
 - 위탁교육 기간 및 횟수는 숙려제 운영방침과 달리 학교 여건에 따라 실시

- 교육지원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대상 현장점검 및 컨설팅 실시(연 2회, 상반기/하반기)

5 세부 추진 계획

1. 운영 개요

- 운영 기간 : 2019. 11월까지
- 운영 대상 : 중·고등학교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 위기학생
- 운영 주체 :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(공모에 의해 선정)
- 운영 내용 : 학업중단 위기학생들의 요구에 맞는 대안교육 프로그램 제공
- 운영 예산 : 165,000천원

2. 운영 기관 공모 개요

□ 운영 기관 공모 개요

- 선정 기관 수
 - 장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: 1기관(청주 지역)
 - 단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: 25기관(지역별 선정)
 - 단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교육지원청별 선정 규모(예정)(초과 가능)

구분	청주	충주	제천	보은	옥천	영동	진천	괴산증평	음성	단양	계
기관수	6	3	3	2	2	2	2	2	2	1	25

- 교육지원청별 최소 1기관 이상 단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선정

- 응모 기준(자격 요건)

- 공통 사항

- 진로직업교육 및 인성교육을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는 기관
- 공고일 현재 면허, 허가, 등록 또는 지정취소, 휴폐업, 업무정지 등 결격 사유가 없는 기관
- 직원 중 성범죄(성희롱, 성추행, 성폭력) 등으로 무리를 야기한 사례가 있을 경우 지원 불가

- 장기 대안교육 위탁교육 기관

- 최소 1년 이상 일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이 가능한 기관
-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안교육 위탁 대상 학생만을 전담할 수 있는 기관

- 단기 대안교육 위탁교육 기관

- 최소 1개월 이상 3개월까지의 위탁교육이 가능한 기관

□ 운영 방법

● 운영 기간: [2019. 11월까지](#)

● (도교육청)

-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계획 안내
- 장·단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선정
- 대안교육 위탁교육 경비 지급 및 위탁교육기관 운영 점검 등

● (교육지원청)

- 단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공모 및 선정(최종 심사는 도교육청에서 실시)
- 장·단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점검 등

● (각급학교)

- 단기 대안교육 위탁교육 기관 추천 협조(지역별 교육지원청으로 추천)
- 위탁교육 의뢰 및 학생 출결, 성적, 안전관리 등
- 학교에서의 위탁 절차

① 학업중단 위기 학생 및 학교 부적응 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위탁교육 희망

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개최

③ 학교장 결재 :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서 첨부, 동의서 학교 보관

④ 위탁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의뢰

※ 위탁교육의뢰 관련 공문을 위탁교육 신청서, 위탁교육 의뢰서를 첨부하여 위탁교육기관으로 발송

● (위탁교육기관)

- 위탁교육 및 위탁학생 출석, 안전 관리 등

- 위탁교육 종료 후 학교 및 교육청에 운영 결과(출석부 등) 제출
- 위탁교육기관에서의 교육 절차

- ① 학교로부터 위탁교육 의뢰 공문 접수
- ② 진로직업 위탁교육 적합 여부 판단
- ③ 학생 관리카드 작성 및 위탁교육 진행
- ④ 매월 말 학생의 출석 결과를 학생의 소속 학교로 송부
- ⑤ 실습 전 반드시 안전교육 실시
- ⑥ 위탁교육 종료 후 위탁교육 경비 신청 서류를 교육청으로 제출

□ 지원 내용

- 장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: 대안교육위탁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
- 단기 대안교육 위탁교육 기관 위탁생 교육비

대상자	지급 기준	비고
학생	전일제(학업중단숙려제, 학교폭력 피해학생, 미혼모 위탁 시만 가능) 기관에 의뢰한 일(日)수×45,000원 반일제(대안교육 위탁) 기관에 의뢰한 일(日)수×25,000원	충청북도 특별교육기관 위탁경비에 준하되, 재료비 5,000원 추가 가능

- 기관 당 기본 운영비 500,000원 지원: 위탁교육을 위한 물품(교구, 수업 활용 사전 재료·교재 구입, 청소용역비 등 활용)
- 위탁기관 교직원 인건비·시설 구축·단순기관 운영비로 사용 불가
- 위탁교육 종료 후 위탁생 교육비 신청, 도교육청 교육비 지급(분기별)
- 위탁생 운영경비 예산 소진 시 운영 해제
- 운영기관별 운영 진행상황에 따라 위탁생 교육비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음

6**소요 예산**

구 분	산출식	소요 예산(천원)	비 고
장기 대안교육 위탁기관	80,000천원×1기관=	80,000천원	
단기 대안교육 위탁생 교육비	3,400천원×25기관=	85,000천원	

※ 위탁생 수, 위탁교육 기간, 운영 진행상황 등에 따라 기관별 차등 지급

7**기대 효과**

- 대안교육 활성화, 다양화를 통한 학업 중단 예방 학생 감소
- 잠재적 학업중단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, 적성, 희망, 진로에 맞는 교육 제공